



연말정산간소화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안내 〈안경·의료기기·산후조리원 사업자〉

국세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
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에 필요한 영수증을 일일이 수집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일괄 수집하여 국세청 홈택스 (www.hometax.go.kr)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「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」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'21년 1월 7일(목)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'20년 귀속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, 귀 기관과 근로자 모두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개별적으로 발급하거나 수집하는데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.

귀 기관의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에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.

2020년 12월 일

세무서장(관인생략)

증명자료 제출요령은 뒷면 안내를 참조하시고,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
【☎(국번 없이) 126 ⇨ ①홈택스 ⇨ ⑤연말정산간소화】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귀속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요령

1 제출대상기관

- 안경·의료기기 사업자
- 「모자보건법」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

2 제출자료

- **시력보정용 안경** 또는 **콘택트렌즈** 구입비(1명당 연 50만원 이내 공제 가능)
- **장애인 보장구**(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제105조) 및 의사·치과의사·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**의료기기**(「의료기기법」제2조제1항)를 구입 또는 임차한 비용, **보청기** 구입비
- 「모자보건법」 제2조 제10호에 따른 **산후조리원에 지출한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**(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공제 가능)

3 제출대상 기간 : 2020. 1. 1. ~ 2020. 12. 31.

4 자료제출 방법

- 홈택스 로그인 :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 사업자계정으로 로그인 또는 개인으로 로그인 후 사업자로 전환하여 이용
- 로그인>조회/발급>연말정산간소화>소득·세액공제 자료제출>제출자료 종류 선택 후 자료를 직접 입력하거나, 국세청이 제공하는 표준양식(엑셀파일)에 입력하여 파일로 제출
 -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>자료실(자료번호 468) [연말정산간소화] 2020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자료 제출 방법을 참조

5 제출기간 : 2021. 1. 1. ~ 2021. 1. 7.까지 제출 (부득이한 경우 1.13. 20시까지 제출)

- '21.1.13.까지 제출된 자료는 근로자가 1.15.부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.
- 1.15. 이후 근로자나 세무서 담당자의 요청 등으로 자료를 수정·추가할 경우 '21.1.15.~'21.1.18.까지 제출(제출시간 18시~22시, 18일은 18시~20시)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수정·추가 제출분을 1.20.부터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6 유의사항

- 제출한 자료 100건 중 오류 10건이 포함되어 이를 수정하여 제출할 경우 반드시 수정분 10건을 포함한 전체 100건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